

「정주자」는 행동이

선량

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정주자 자격에 의한 일본 입국 법률이 일부 변경—

최근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오시는 분의 범죄가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무성은 일제인, 또는 그 가족이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받는 요건으로 「소행이 선량할 것」이라는 항목을 법률에 추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에 오시고 싶어하시는 분, 또는 일시귀국하시는 분, 관계자인 분은 주의해 주십시오.

● 대상이 되는 사람

- 일제인
- 일제인의 미성년으로 미혼인 실제 자녀
- 일제인의 배우자
- 일제인의 배우자의 미성년으로 미혼인 실제 자녀

(중국잔류방인과 그 친족 ⇔ 이런 분이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는 「소행선량」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 「정주자」란...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해서 거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 소행이 선량하다는 것의 증명은

일제인 및 그 가족으로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해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브라질연방경찰이나 살고 있는 주의 민사경찰이 발행하는 무범죄증명서
페루...페루국가경찰감직국 감직부 범죄력증명서발급과가 발행한 무범죄증명서
필리핀...필리핀국가경찰 및 필리핀국가수사국발행의 증명서

● 본국에서 범죄력이 있는 사람은

제출된 증명서로 일본국 이외의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 금고,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는 죄는 제외함) 을 받은 사람은 「소행선량」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①형 집행 후 10년 경과 ②형 집행면제로부터 10년 경과 ③집행유예기간을 경과 ④벌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

● 일본에서 범죄력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령에 위반해서 징역, 금고 또는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에 의한 벌금은 제외) 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행선량」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범죄력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경우 혹은 일상생활에 있어 위법행위를

